

규정심의위원회
의 결 서

규정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2020. 3. 16)

1] 인사관리규정 개정(수정 의결)

○ 부의된 안건 중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삭제

“직원의 신규임용은 연구직의 경우 서류·인적성검사·논문심사·면접시험, 관리직의 경우 경력, 인적성검사, 필기시험, 특수자격(면허 등)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를

“직원의 신규임용은 연구직의 경우 서류·논문발표심사·인적성검사·면접시험, 관리직의 경우 서류·필기시험·인적성검사·면접시험에 의하여 행한다.”로 변경

“인적성검사는 충청남도 통합채용 시행 이후부터 실시”는 삭제

○ 신규임용 방법과 전형에 대한 구체적 조문수정 및 신설

○ 제6조(직원의 신규임용 방법과 전형) 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

- 제1항 중 “직원의 신규임용은 연구직의 경우 서류·논문심사·면접시험, 관리직의 경우 경력, 필기시험, 특수자격(면허 등)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를 “직원의 신규임용은 연구직의 경우 서류·논문발표심사·인적성검사·면접시험, 관리직의 경우 서류·필기시험·인적성검사·면접시험에 의하여 행한다.”로 변경

- 제2항 중 제1호 “서류심사는 채용자격요건, 전공분야 경

력, 연구실적심사, 논문심사”를 “서류심사는 채용자격요건, 전공분야경력, 연구 및 논문 실적 심사”로 변경

- 제2항 중 제3호 “면접시험은 논문발표, 구술시험”을 “논문발표 심사”로 변경

- 제4항 “관리직에 관한 신규임용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

○ 제6조(직원의 신규임용 방법과 전형)의 조문을 아래와 같이 신설

- 제2항 중 제4호 “인적성 검사”, 제5호 “면접시험”을 신설

- 제3항으로 “관리직 일반임용 공개경쟁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를 신설

- 제5항에 제1호 “서류심사”, 제2호 “필기시험”, 제3호 “인적성 검사”, 제4호 “면접시험”을 신설

② 임용시험규칙 개정(부결)

○ 금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규칙개정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협의 후 추후 안건 재상정

③ 근무성적평정규칙 개정(부결)

○ 관리직 근무성적평정규칙을 포함하여 일괄 개정

④ 주40시간근무운영규칙 개정(수정 의결)

○ 부의된 안건 중 아래와 같이 변경

“모든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할 때에는 사전(사후)에 부서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월~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를 “모든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월~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로 변경

“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원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원장은 7일 이내에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

○ 제4조(운영방법)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제4조 제6항을 “제3조 제3항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사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

⑤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개정(원안 의결)

- 차후 부설조직운영규칙에 대한 심의 필요